

4.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案)

建設部公告 第47號. 1991年 4月 25日

가. 개발이익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기존 부과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과 개발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스키장건설사업, 산림훼손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는 사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함.

나.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준공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일정배율을 곱한 면적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면적으로 보도록 함.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급조건 등에 따라 개발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 실제분양한 토지가액을 완료시점지가로 인정하도록 함.

라. 착수시점지가는 사업 착수시점이 속한 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

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명문화함.

마. 현재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를 통하여 매입한 토지가격을 소명하면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출하고 있던 것을 공시지가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출하도록 함.

바. 현재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해 주는 개발비용에 대한 내역을 사업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 등에 확인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의뢰할 수 있도록 함.

사. 1990년 3월 2일 당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착수시점지가를 공시지가로만 산출하던 것을, 국가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함.